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50
------	-----

2023. 5.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이용균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4.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용균 의원)

1. 제안이유

- 디지털 기술의 발전상황에서 각종 정보 접근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그 보호자의 기본적인 권리 확대 방안으로 특히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 등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정보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적용대상을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서 그 보호자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1호).
- 나. 정보취약계층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5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친권자, 보호자,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시키고, 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보격차¹⁾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정보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개정안은 장애인·고령자 등 본인 이외에도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와 사실상 보호자(이하 보호자등)를 포함시켜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현행 조례는 장애인·고령자 등 본인만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제약이 심한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²⁾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³⁾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인 홍보기획관(뉴미디어담당관)은 보호자의 정의를 「민법」 제779조⁴⁾에 따른 가족으로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친권자 보다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을 보호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 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따라서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에 가족을 포함하되 노인복지시설⁵⁾,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민법」 제909조의 친권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및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한다)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장애인·고령자 등 ----- -----.</p> <p>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2) ‘사실상 보호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제5호)

-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에 ‘정보취약계층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서울시가 정보통신접근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5)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⁶⁾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안정성·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디지털정책관 데이터센터기획관리과), 이 중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장애인 본인과 그 직계가족만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보호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음.
- 따라서 개정안을 근거로 보호자로 인정받는 경우, 연고가 없거나 생활 시설에서 거주 중인 정보취약계층은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해소라는 조례의 목적과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앞서 제안한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수정의견
<p>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정보취약계층의 친권자·후견인 및 사실상 보호자 등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u></p>	<p>제6조(추진사업) ----- ----- -----.</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5. <u>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u> ----- ----- -----</p>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

	제안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발 의	이용균 의원 대표 발의	2023. 3. 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의 발전상황에서 각종 정보 접근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그 보호자의 기본적인 권리 확대 방안으로 특히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 등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정보접근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조례 적용대상을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서 그 보호자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1호) - 정보취약계층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5호)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16. 3. 24. 제정)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19. 7. 18.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22. 3. 10. 일부개정) 		
부서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 (안 제2조제1호) “정보취약계층”이란 용어는 타 조례, 지침 등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등의 사업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바 ○ 제2조(정의)에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건의 예정임 			
〈수정안〉			
<p>제2조(정의)</p> <p>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정보취약계층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p>			
담당부서	뉴미디어담당관	팀장	박은미(☎02-2133-6515)
		류은희(☎02-2133-6500)	담당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수정안의 요지

1. 수정이유

- 원안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에 보호자를 포함할 경우 타 조례와 지침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를 별도 용어로 정의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 동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호자가 반드시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를 정보취약계층의 가족과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상 보호자로 정의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2호).

나.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대상에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함
(안 제6조제5호).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장애인·고령자 등(「민법」 제909조의 친권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및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
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안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
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정보취약계층”이란 <u>장애인·고령자</u>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2.·3.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 - <u>장애인·고령자</u> 등(「<u>민법</u>」 제909조의 친권자, 「<u>장애인복지법</u>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및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한다) -----.</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2.·3.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 ----- -----.</p> <p>1. ----- - <u>장애인·고령자</u> 등 ----- ----- ----- -----.</p> <p>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u>민법</u>」 제779조에 따른 가족, 「<u>노인복지법</u>」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u>장애인복지법</u>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제6조(추진사업) -----</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정보취약계층의 친권자·후견인 및 사실상 보호자 등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6조(추진사업) -----</p> <p>-----</p> <p>-----</p> <p>-----</p> <p>-----.</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5. <u>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u></p> <p>6. (개정안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